



제426회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마약류범죄 추가 등>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45호)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16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 참고자료	18

I. 제안경위

가. 주호영의원안

1. 제 안 자 : 주호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31.
3. 회 부 일 : 2025. 01. 02.

나. 이해식의원안

1. 제 안 자 : 이해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04. 01.
3. 회 부 일 : 2025. 04. 0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주호영의원안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면퇴직 사유에서는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란 및 공포·불안감 유발 부호·영상 등 배포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톱킹범죄’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마약류 확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마약류 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하여야 하는 직무에 있는 경찰관의 마약 투약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마약류 관련 범죄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규정과 맞추어 정비하고, 추가로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9조 및 제27조 단서).

나. 이해식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단속하고 저지하여야 할 직분에 있는 현직 경찰관의 마약류 투약 사건 등이 발생하여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파수꾼으로서 그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채용시부터 복무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마약류에 관한 통제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관의 결격사유로 하나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경찰관 임용시험 등에 신체검사와 함께 마약류검사를 실시하며, 경찰공무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마약류검사를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 제2항제6호의2·제8호라목 및 제22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들은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고(주호영·이해식의원안 제8조제2항),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며(주호영의원안 제27조), 경찰공무원 임용시험 시 마약류검사 실시 및 재직 중 정기적 마약류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이해식의원안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의2 신설).

현 행	주호영의원안	이해식의원안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생 략)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 ----- ----- -----.	②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6의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7. (생략)	7.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u><신 설></u>	8. 다음 각 목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 는 죄----- ----- ----- ----- ----- ----- ----- ----- ----- ----- 가.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 2호 및 제3호 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	8. ----- ----- ----- ----- ----- ----- ----- ----- ----- ----- 가. ~ 다. (현행 과 같음) 라. 「마약류 관리 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죄 9. · 10. (현행과 같 음)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9. · 10. (생 략) 제9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 8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제7호 또 는 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 합범에 대하여 벌금 형을 선고하는 경우 에는 이를 분리선고 하여야 한다. 제20조(시험 실시 기관 과 응시자격 등) ① (생 략) <u><신 설></u>	<u>죄</u> 라. 「마약류 관리 에 관한 법 률」에 따른 <u>죄</u> 9. · 10. (현행과 같 음) 제9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 ----- ----- --제8호 각 목에 따 른 죄----- ----- ----- ----- -----. 제20조(시험 실시 기관 과 응시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9. · 10. (현행과 같음) 제9조(벌금형의 분리 선고)----- ----- ----- ----- ----- ----- -----. 제20조(시험 실시 기관 과 응시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각 종 시험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한다. 1. 신체검사(제22조 의2에 따른 마약
--	---	--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류검사를 포함한
다)

2. 체력검사

3. 종합적성검사

4. 필기시험

5. 면접시험

6. 실기시험

7. 서류전형

8.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검사
또는 시험

③ 제1항 및 제2항-
-----구
체적인 시험방법---

-----.

제22조의2(마약류검사
실시)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은 경찰공무원의 건
강과 안전한 직무수
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
여 정기적으로 「마
약류 관리에 관한

		<u>법률」 제2조제1호</u> <u>에 따른 마약류의</u> <u>투약, 흡연 또는 섭</u> <u>취 여부에 관한 검</u> <u>사(이하 “마약류검</u> <u>사”라 한다)를 실시</u> <u>할 수 있다.</u> <u>② 마약류검사의 실</u> <u>시대상, 실시의 시기</u> <u>· 주기 · 방법 · 절차</u> <u>및 그 밖에 필요한</u> <u>사항은 대통령령으</u> <u>로 정한다.</u>
제27조(당연퇴직) 경찰	제27조(당연퇴직) -----	제27조(당연퇴직)
공무원이 제8조제2	-----	(현행과 같음)
항 각 호의 어느 하	-----	
나에 해당하게 된	-----	
경우에는 당연히 퇴	-----	
직한다. 다만, 제8조	-----.	
제2항제4호는 파산	-----	
선고를 받은 사람으	-----	
로서 「채무자 회생	-----	
및 파산에 관한 법	-----	
률」에 따라 신청기	-----	
한 내에 면책신청을	-----	
하지 아니하였거나	-----	
면책불허가 결정 또	-----	
는 면책 취소가 확	-----	

정된 경우만 해당하 고, 제8조제2항제6호 는 「형법」 제129 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 별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 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 우만 해당한다.	----- ----- ----- ----- ----- ----- -----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제3호, 「스 토킹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8조의2 · 제59조부터 제64 조까지·제65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 ---
---	--

먼저,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추가
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¹⁾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고, 주호영의원안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결격사유)으로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복수국적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음란한 영상 배포등) 및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영상등 전송)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를 범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²⁾ 이는 국민 전체에 대한 공무를

1)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죄의 구체적 내용은 본 검토보고서 참고자료 참조.

2)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5. 1. 7.>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담보되도록 그 임용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

[최근 5년간 마약류 관련 범죄 현황]

(단위: 명)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검거 인원	12,209	10,626	12,387	17,817	13,512

※ 자료 : 경찰청

[최근 5년간 마약류 경찰공무원 입건 및 징계 현황]

(단위: 명)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입건 인원	-	-	2	4	2
징계 인원	1	-	-	-	-

※ 자료 : 경찰청

개정안들은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있는데,

최근 마약류 확산 및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 및 마약류의 단속·수사·규제 등을 직접 수행

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감안할 때, 마약류 중독자 및 마약류 관련 범죄자에 대한 임용 제한은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됨.

다만, 주호영의원안은 임용 제한 사유로 ‘스토킹범죄’ 및 ‘온라인상 음란물 등 유통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범죄는 이미 「경찰공무원법」이 개정(2025.1.7.시행)되어 결격사유에 반영되어 있음.³⁾

3) 「경찰공무원법」 <개정 2025. 1. 7.>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5. 1. 7.>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제27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8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참고로, 중독자에 대해서는 현행 「군인사법」 및 「교육공무원법」에서 일정 직급 이상의 군인과 교육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규정하고 있으며⁴⁾, 최근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중독자 외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로 벌금형(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장교·준사관·부사관 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였음(동법 제10조제2항제6의3호 신설).⁵⁾

4) 현행 「군인사법」 및 「교육공무원법」 결격사유 조문

군인사법	교육공무원법
제10조(결격사유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2의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8. 생략)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5)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법률 제20803호, 2025. 3. 18., 일부개정, 시행 2025. 9. 19.)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또한,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도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⁶⁾

다음으로, 마약류검사 실시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이해식의원안은 경찰공무원 임용·승진시험 시 마약류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 실시와 재직 중 정기적 마약류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담당하는 직무의 특성상, 타 직렬 공무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책임성이 요구됨. 특히 마약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직무 특성상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와 직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대한 검사를 가능하도록 하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 6의2. (생략)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본 검토보고서 [참고자료] 참조.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유사한 취지에서 2024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⁷⁾에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마약류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검사의 대상·시기·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마약류 투약 여부 등에 대한 검사는 경찰공무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⁸⁾한다는 점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이라는 광범위한 목적 하에 구체적인 검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검사 대상을 마약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마약사범 단속·수사와 관련한 경찰관이나 마약류 투약 등이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3(마약류 투약 등 검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 검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시행일: 2024. 8. 7.]**

8) “청구인이 그 주장과 같이 법률상 근거 없이 의무도 없는 소변채취를 강요당하였다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하기 싫은 일(소변을 받아 제출하는 일)을 하지 않을 자유, 자기 신체상태나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알리지 않을 자유]과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의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06. 7. 27. 2005헌마277 소변강제채취 위헌확인]

한정하지 않고 전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실효성 및 과잉규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⁹⁾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직무 특성상 높은 수준의 국민 신뢰 및 도덕성, 준법성이 요구되며, 최근 마약류 확산 및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할 때 마약류 관련 결격사유 추가 및 정기적 마약류검사 실시는 필요하다는 입장임.

아울러 「경찰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에서 신규채용 시 신체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위임을 받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에서 약물검사(필로폰,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에 관해 이미 규정하고 있으나,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한 국가 중요정책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해당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임.¹⁰⁾

9) 전국경찰직장협의회회는 정기 마약 검사 실시 움직임에 대해 성명서(2023.10.29.)를 내고, "한 경찰관의 일탈 행위를 경찰 조직 전체로 일반화하고 경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13만 경찰관들은 심각한 우려와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음.

10) 「마약류검사」에 관한 규정(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① 「경찰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③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4조의2(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①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체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며, 특수부서에 근무할 사람 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 (체격부분)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비고) 1. 위 "체격" 항목 중 "약물검사", "직무에 적합한 신체"와 "문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법무부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동일한 개정안에 대해¹¹⁾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마약검사는 경찰공무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나 검사 대상, 시기, 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등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검사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 소지(대상자 동의 없는 강제체노 가능성)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344

③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예규)

제10조(시험의 단계) ①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방법 중 제1차시험(신체검사)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실시하되, 직무에 적합한 신체 및 문신에 관한 검사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경찰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제10조 제1항 관련)

평가항목	내 용	신체검사 기준 (불합격 판정기준)
약물 검사	약물(마약류) 종류	필로폰(MA), 대마(THC), 케타민(Ketamine), 엑스터시(MDMA), 코카인(COC), 아편(OPI)의 검출

1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23.11.14.발의, 의안번호 제2125406호)

<참고자료 1>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및 범죄 유형

1. 마약류 유형

구 분		내 용		
마약(제2조제2호)		아편계(양귀비,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코카계(코카잎, 코카인, 엑고닌 등) 합성마약(페티딘, 펜타닐, 메타돈 등)		
향정신성의 약품 (제2조제3호)	‘가’ 목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으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오남용 시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음 ※ 환각제, 합성대마, 합성케치논, 크라툼 등		
	‘나’ 목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며 이를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킴 ※ 암페타민류 각성제, 케타민, 졸레틸 등		
	‘다’ 목	가목·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며 오남용 시 심하지 않은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킴 ※ 진정수면제, LSA, 부프레노르핀, 펜타조신 등		
	‘라’ 목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 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음 ※ 신경안정제(졸피뎀·프로포폴 등), GHB(물뽕), 러미라, S정, 펜터 민 등		
	‘마’ 목	‘가’ 목 ~ ‘라’ 목을 함유하는 혼합물질·혼합제제		
대마(제2조제4호)		대마초·수지 및 화학적 합성품, 혼합물질 등		
임시마약 (제5조의2제1항)		마약류가 아니지만 식약처장이 마약류에 준하는 취급·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table><tr><th>1군 임시마약류</th><th>2군 임시마약류</th></tr><tr><td>중추신경계 작용 또는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td><td>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td></tr></table>	1군 임시마약류	2군 임시마약류
1군 임시마약류	2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 작용 또는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2. 투약·단순소지 등 죄

가. 제1유형(마약, 향정 '가' 목 등)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마약	소자·소유·관리·수수	§59 ① 9호	1년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60 ① 1호	10년 ↓	1억 ↓
헤로인	소자·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투약·제공	§59 ① 3호	1년 ↑	
향정 '가' 목	소자·소유·관리·수수	§59 ① 5호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60 ① 1호	10년 ↓	1억 ↓
1군 임시마약	소자·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59 ① 13호	1년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60 ① 5호	10년 ↓	1억 ↓
상습범		§59 ②	3년 ↑	
		§60 ②	1/2 가중	

나. 제2유형(향정 '나', '다' 목 등)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향정 '나' 목	소자·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	§60 ① 2호	10년 ↓	1억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61 ① 1호	5년 ↓	5천만 ↓
향정 '다' 목	소자·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	§60 ① 2호	10년 ↓	1억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61 ① 1호	5년 ↓	5천만 ↓
상습범		§60 ②	1/2 가중	
		§61 ②	1/2 가중	

다. 제3유형(대마, 향정 '라', '마' 목 등)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향정 '라' 목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	§61 ① 5호	5년 ↓	5천만 ↓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61 ① 1호		
향정 '마' 목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61 ① 1호		
대마 등	재배·소지·소유·운반·보관·사용	§61 ① 6호		
	종자 껍질 흡연·섭취·소지	§61 ① 4호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61 ① 1호		
원료식물 등	(마약) 재배·소지·소유	§61 ① 3호		
	(향정'가) 흡연·섭취·소지·소유	§61 ① 3호		
2군 임시마약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61 ① 8호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상습범		§61 ②	1/2 가중	

3. 매매·알선 등 죄

가. 제1유형(마약, 향정 '가' 목 등)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마약	매매·알선 / 목적 소지·소유	§58 ① 1호	무기 또는 5년 ↑
향정 '가' 목	매매·알선·수수 / 목적 소지·소유	§58 ① 3호	
1군 임시마약	매매·알선·수수·제공 / 목적 소지·소유	§58 ① 8호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향정 등	매매·알선·수수 / 목적 소지·소유	§58 ① 7호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다' 목 등)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향정 '나, 다' 목	매매·알선·수수·제공	§60 ① 2호	10년 ↓ 1억 ↓
대마	매매·알선 / 목적 소지·소유	§59 ① 7호	1년 ↑
마약 원료·종자	관리·수사·성분 추출	§59 ① 2호	
마약·향정 원료·물질	제조 목적 매매·알선·수수 / 목적 소지·소유·사용	§59 ① 4호	
향정 '가' 목 원료·물질	매매·알선·수수 / 목적 소지·소유	§59 ① 6호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범죄	수수·제공·흡연·섭취	§59 ① 8호	3년 ↑ 1/2 가중
상습범		§59 ② §60 ②	

다. 제3유형(향정 '라' 목 등)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향정 '라' 목	매매·알선·수수·제공	§61 ① 5호	5년 ↓ 5천만 ↓
대마 등	수수	§61 ① 6호	
	종자·껍질 매매·알선	§61 ① 4호	
2군 임시마약	매매·알선·수수·제공 / 목적 소지·소유	§61 ① 8호	
상습범		§61 ②	1/2 가중

라.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마약·향정 '가' 1군 임시마약	영리 목적 매매·알선·수수 /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58 ②	사형·무기 또는 10년 ↑
	상습 매매·알선·수수 등 / 미성년자에 대한 매 매·수수·조제·투약·제공		
기타 향정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 투약·제공		
	상습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4. 수출입·제조 등 죄

가. 제1유형(마약, 향정 '가', '나' 목 등)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마약	수출입·제조 / 목적 소지·소유	§58 ① 1호	무기 또는 5년↑
향정 '가' 목	수출입·제조 / 목적 소지·소유	§58 ① 3호	
	원료식물 성분추출수출입 / 목적 소지·소유	§58 ① 4호	
향정 '나' 목	수출입·제조 / 목적 소지·소유	§58 ① 6호	
마약·향정 원료물질	원료물질 수출입·제조 / 목적 소지·소유	§58 ① 2호	
1군 임시마약	수출입·제조 / 목적 소지·소유	§58 ① 6호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다' 목 등)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대마	수출입 / 목적 소지·소유	§58 ① 5호	무기 또는 5년↑
	제조 / 목적 소지·소유	§59 ① 7호	1년↑
향정 '다' 목	수출입 / 목적 소지·소유	§59 ① 10호	
상습범		§59 ②	3년↑

다. 제3유형(향정 '라' 목 등)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마약 원료식물	수출입·매매·제조 목적 재배 등	§59 ① 1호	1년↑
대마초	수출·매매·제조 목적 재배	§59 ① 11호	
향정 '라' 목	수출입·제조 / 목적 소지·소유	§60 ① 3호	10년↓ 1억↓
2군 임시마약	수출입·제조 / 목적 소지·소유	§60 ① 6호	
상습범		§59 ②	3년↑
		§60 ②	1/2 가중

라.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마약, 대마, 향정 '가, 나', 원료물질 1군 임시마약	영리 목적 수출입·제조 등	§58 ②	사형·무기 또는 10년↑
	상습 수출입·제조 등		

[참고자료 2]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안 발의 내용¹²⁾

현 행	개정안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 6의2. (생 략)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 다. (생 략) <신 설>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u>성폭력범죄</u>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u>성범죄</u> 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 마. (생 략) 7.·8. (생 략)	제33조(결격사유) ----- -----.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 ----- <u>성폭력범죄</u> ,----- ----- <u>성범죄</u>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죄를</u> ----- 가. ~ 마. (현행과 같음) 7.·8. (현행과 같음)

12)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72호, '24. 12. 31.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계류중.